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77
----------	------------

2019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 지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므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야외운동기구 및 총괄부서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명시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을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체육국을 말한다”를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u>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u></p> <p>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u>관광체육국을 말한다.</u></p> <p>제4조(관리주체) ① (생략)</p> <p><u>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u>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u></p> <p>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u>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u></p> <p>제4조(관리주체)_(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